

보건진료소 운영규정(4-1-3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설치한 보건진료소(이하 “보건진료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보건 진료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
2.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
3. 각종 질병의 예방
4. 교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
5. 응급 처치법 및 가정 간호교육
6. 기타 건강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규정의 변경) 이 규정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구성) 보건 진료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소장 : 1인
2. 의사 : 약간명
3. 간호사 및 간호 보조사 : 약간명
4. 사무직원 : 약간명

제5조(소장) ① 소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으로 지휘감독하고 보건 진료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보건 진료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1. 사업계획
2. 예산 및 결산

3.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 제정의 발의

4. 기타 보건진료소에 관한 중요사항

②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직원) ① 의사는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교의로 위촉한다.

② 간호사, 간호보조사 및 사무직원은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의거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재 정

제8조(재정) 이 보건진료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, 학생의 보건비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9조(예산 및 결산) 보건진료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회계년도) 보건진료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.

제4장 해 산

제11조(해산) 보건진료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재산의 귀속) 보건진료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